【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 (공시송달) 공고 제 2026 - 89호】

직업정보제공사업체의 직업안정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

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7조, 직업안정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등과 관련하여 직업안정법 위반(소재지 변경 미신고) 처분사전통지서(의견제출통지)를 발송하였으나,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.

2026. 11. 04.

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

1. 건 명 : 처분사전통지(의견제출통지)
2. 근 거 : 직업안정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,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: 붙임-공시송달 명단 참조

연번	사업장명	사업자 번호	주소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내용	송달불능사유
1	러브알*	306-0*-10533	서울 마포구 (이하생략)	행정처분 사전통지	○ 직업안정법 위반(소재지 변경 미신고)에 따른 사전 처분통지서 - 처분사유: 소재지 변경 미신고 - 처분내용: 변경신고 누락 1차 위반에 따른 "경고" 행정처분	수취인 불분명

4. 공고기간: 2026. 11. 04. ~ 2026. 11. 19.(15일간)
5. 의견제출안내 :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부지청 고용관리과 운영지원팀(서울 마포구 독막로 320, 태영데시앙빌딩 5층)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(F.02-713-8783)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
6. 기타 사항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부지청 고용관리과 운영지원팀 여동준 주무관(☎ 02-2077-6116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